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제정이유

- 구민에게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,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 및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「종로문화체육센터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II. 주요골자

가. 명칭 및 위치 (안 제1조 내지 제3조)

- 명 칭 : 종로문화체육센터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84-1호

나. 관리 및 운영 (안 제6조)

종로문화체육센터는 종로구청장이 관리·운영함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음.

다. 운영위원회 (안 제8조)

- 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종로문화체육센터운영위원회를 둔.

라. 시설의 사용 (안 제9조)

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함.

마. 사용료 징수, 납부 및 반환 (안 제10조 및 제11조)

-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함.
-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.

-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 후 또는 행사종료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.

바.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 발행 (안 제12조)

-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
-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,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익 총액을 통보하여야 함

사. 기 타 (안 제14조 및 제15조)

-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
-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

III. 검토의견

1. 조례제정 경위

-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 및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8억 6,500만원(시비 21억 6천만원 포함)을 투입하여 200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연 면적 2,044평(지하 2층, 지상 3층) 규모의 주민친화형 복합문화체육시설인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,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평)

구 분	지하2층	지하1층	지상1층	지상2층	지상3층
계	522.89	599.14	444.18	360.84	115.68
주요 시설	주차장, 기계실 전기실 등	수영장, 헬스장 샤워실, 공조실	공연장, 매점 다목적강의실	다목적체육관 연습실 등	문화체험관 사무실 등

-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및 제135조(공공시설) 규정에 의거, 향후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준공시 차질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준공전에 관련규정 등을 미리 정비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2. 검토사항

○ 본 조례안은 총 2장 18개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

-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(제4조, 제5조)
-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(제6조)
- 시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(제9조 내지 제15조)과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, 상위법령에의 저촉이나 입법형식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.

○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,

- 안 제6조에서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,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바, 공공성과 운영수지면을 함께 고려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비용절감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, 타 자치구의 경우도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타 자치구 문화체육시설 운영·관리 현황

구 분	시설관리공단	구청 직영	별도기관	분리운영
24개 구	18개구	3개구 (노원,은평,관악)	2개구 (중구,서초구)	1개구 (광진구)

- 안 제8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현재 운영중인 종로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사례에 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나,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개관과 함께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, 향후 종로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한 유사 공공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- 안 제10조의 [별표] 사용료 기준과 관련하여, 종로구민회관 및 타 자치구의 유사시설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, 공연장의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운영상 어려움도 예상되므로 각종 공연단체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.

IV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

第9條 (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)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. 다만,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教育·體育·文化·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

나. 圖書館·運動場·廣場·體育館·博物館·公演場·美術館·音樂堂 등 公共教育·體育·文化施設의 設置 및 管理

第95條 (事務의 委任등)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·檢査·檢定·管理業務 등 住民의 權利·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·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.

第127條 (使用料)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.

第130條 (使用料의 徵收條例등) ①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第135條 (公共施設)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.

○ 지방재정법

第109條 (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) 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·관리및사용료정수조례시행규칙

제5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구민회관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.

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, 생활복지국장, 총무과장, 기획예산과장, 공단지사장 또는 위탁운영자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구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
1. 구의원, 주민대표등
2. 문화·예술·체육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
3. 직능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자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
3. 수탁자 선정 및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
4.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타구 및 관내시설 수영장 수강료 현황

(2006.6.8 기준)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대 상	기본사용료	주 6회	비 고
종로문화체육센터	성 인	3,500	71,400	6일 강습
	청소년	2,000	40,800	"
	어린이	1,500	30,600	"
종로구민회관	성 인	3,500	71,400	"
	청소년	2,000	없음	"
	어린이	1,500	없음	"
올림픽국민생활관	성 인	3,500	71,400	"
	청소년	2,000	40,800	"
	어린이	1,500	없음	"
중구충무아트홀	성 인	4,000	50,000	3일강습, 3일 자유수영
	청소년	4,000	50,000	"
	어린이	3,500	38,000	"
광진문화예술회관	성 인	3,000	50,000	3일 강습
	청소년	2,000	35,000	"
	어린이	1,000	30,000	"
금천문화체육센터	성 인	3,200	72,600	6일 강습
	청소년	2,200	67,800	"
	어린이	1,600	36,400	"

타 자치단체 공연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현황

(2006. 6. 8 기준)

□ 공연장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	오 전	오 후	야 간	철 야
종로 문화체육센터 (381석)	연 습	50,000	100,000	100,000	200,000
	공 연	100,000	150,000	150,000	200,000
	행 사	400,000	500,000	500,000	200,000
종로구민회관 (456석)	연 습	공연·행사의 50%			
	공 연	8만원(3시간 단위),			
	행 사	1시간 초가시마다 4만원씩			
중구 충무아트홀 (809석)	연 습	공연·행사의 50%			
	공 연	150만원(4시간 기준)			
	행 사	200만원(4시간 기준)			
서대문 문화체육회관 (604석)	연 습	공연·행사의 50%			
	공 연	60,000	80,000	100,000	없음
	행 사	80,000	100,000	120,000	없음
금천 문화체육센터 (286석)	연 습	100,000(4시간 단위), 초과사용료(주간 : 시간당10%, 야간 : 시간당20%)			
	공 연				
	행 사				

□ 부대시설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피아노	음향시설	조명시설	영상장비	녹음및녹화	냉·난방
종로 문화체육센터	30,000	50,000	50,000	30,000	20,000	90,000
종로구민회관	10,000	10,000	30,000	20,000	30,000	60,000
중구 충무아트홀	70,000	대관료에 포함됨			15,000	.
서대문 문화체육회관	30,000	10,000	30,000	20,000	10,000	연료시가따라결정
금천 문화체육센터	15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60,000

※ 3시간 기준임